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지방우정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14명(9급 14명)을 감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우정사업본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. 28. ~ 2. 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33,069”를 “33,05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3,069”를 “33,055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33,045”를 “33,031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29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33,069</u>	<u>33,055</u>	-14
일반직 계	<u>33,069</u>	<u>33,055</u>	-14
•	•	•	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33,045</u>	<u>33,031</u>	-14
•	•	•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74